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이주현)

1.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18. 04. 02.
- 회부일 : 2018. 04. 04. (의안번호 : 18-23)

2. 제출이유

구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해 설치할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를 동의를 얻기 위함

3. 주요내용

- 도서관 현황
 - 위치 : 아현동 770(아현동 주민편의 복합시설 지하1층)
 - 운영 : 관장 1명(사서), 35석 열람석, 장서 9,000권
- 향후계획
 - 위탁체 모집공고 : 2018. 5월중
 - 아현동 작은 도서관 개관 : 2018.9.1일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 예산조치 : 향후 조치필요
- 기타사항 : 조례 개정안 시행관련, 규제·부패·갈등·성별 등 분야별 사전영향평가 협의사항의 경우 해당내용 없음

5. 검토의견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인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무임.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 및 관리)에 의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와관련,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이건 민간위탁동의안을 마포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위탁동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사무의 범위, 위탁기간, 소요 예산 등 종합 검토해 볼 때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해 설치될 “아현동 작은도서관(가칭)”을 향후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설치 목적을 살려 운영될 수 있도록 금번 의회에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자료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 및 관리)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참고자료]

작은도서관 진흥법 (약칭: 작은도서관법)

[시행 2016.5.4.] [법률 제13973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29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행정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전에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15.9.24>